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(안) 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98
제 출 자	소형준 의원 외 8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(안)
검 토	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제안이유

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수행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1조 ~ 제2조 : 목적 및 정의

나. 제3조 : 교섭단체의 구성

-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, 그 외 의원 3명 이상 별도 교섭단체 구성

다. 제4조 : 교섭단체의 기능

-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성 등

라. 제5조 : 예산의 지원

-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2조(의회규칙)

나. 예산조치 : “해당 없음”

다. 입법예고 : “해당 없음”

4. 검토의견

- 본 규칙(안)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제1~2조는 교섭단체의 목적과 정의, 제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,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, 제5조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검토 결과, 본 규칙(안)은 의회 내 일정한 정당 및 단체에 속한 의원들의 의사를 조율하고 사전에 교섭단체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규칙 제정을 통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